

#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

## -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중심으로

오윤이\* · 나종민\*\*

###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2014년 3월 대검찰청에서 시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계층적 구조를 가진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준 일반 선형회귀모형(multi-level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 정책 시행 이후 약식명령에 비해 정식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 그리고 선고된 형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해당 정책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그러한 개별사건의 재판 결과가 관할 법원소재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 정책의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법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 정책의 효과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오히려 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재판 결과의 지역적 편차에 대한 주요 결과들은 일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고 여러 제약하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후속연구들을 통해 보다 정교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3.31.1.203>.

❖ 주제어 :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 재판 결과, 양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주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BK사업단 박사후연구원(ratemail@snu.ac.kr)

본 연구는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연구문제에서 출발하였고 이를 수정, 보완, 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힌다.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원(chongmin20@snu.ac.kr)

## I. 서론

형사사법에서 엄벌주의 경향은 1970-80년대 이래 미국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 이외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테러 위협과 범죄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보다는 다중의 안전과 범죄 억제 및 예방을 보다 중시하며 최후수단성(ultima ratio), 체계 정합성, 지식기반성 등의 원칙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법은 확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하태훈, 2022: 9).

한국도 미국, 유럽 등지에 비하여 출발이 늦은 감이 있으나 예외가 아니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50년 이상 유지되던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이 2010년, 15년에서 30년으로 두 배 상향조정되었고 가중시의 상한 또한 50년으로 개정되었다(형법 제42조). 이를 기점으로 우리 형사법에서의 엄벌주의 트렌드는 특히 성범죄 관련 입법으로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sup>1)</sup> 각종 법정형도 크게 상향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제한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등 각종 사회내처분도 적극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특히 잔혹한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아동 사망과 같이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거나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입법 활동은 국가의 재정 부담 없이도 손쉽게 국민의 마음을 사는 유효한 득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형법의 확장 또는 팽창, 형사처벌의 전치화 등으로도 이해되는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책의 도입 배경에는 정치인들의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 행태가 놓여 있다는 분석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우리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한균, 2008; 김일수, 2010; 이덕인, 2011; 이호중, 2013; 최정학, 2014; 추지현, 2017a; 하태훈, 2022).

1) 2013년 6월, 성폭력 범죄 관련하여 무려 6개 법률, 150여개의 신설·개정 조문이 시행되었는데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 것이 특징적이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조항’, 일명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라는 대중의 요구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우리 사회의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등 엄벌을 요구하는 경찰학계의 논의도 적지 않다(정우일, 2009; 차훈진, 2009; 박상용, 2010; 이진국, 2014).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의 기본 영역 처벌 범위가 기존 ‘6월~1년4월’에서 ‘6월~1년6월’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최초의 엄벌주의적 입법 시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상향폭이 타범죄에 비하여<sup>3)</sup> 상당히 소폭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법 제136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은 1995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막말을 하고 상해를 입히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대중의 엄벌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런데 실상 우리 정부는 2014년에 검찰 조직 내 정책으로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처 지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엄벌 정책으로 인한 검찰 기소처분에서의 행태 변화는 뚜렷하게 드러난다([그림 2] 참조).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구공판할 것, 둘째, 동종전과 없고 추중범행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 셋째, 각 구간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 정책 시행 전까지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70% 이상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처리해 왔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며(제198조 제1항) 현행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구속 기준<sup>4)</sup>에 대비해 보아도 동종전과 없거나 피해가 경미한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는 방침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본 연구는 이렇듯 검찰이라는 형사사법기관의 정책 변화가 실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엄벌주의적 정책 변화는 관련법 제·개정이든 각종 사회내처분 도입이든 입법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입법

3)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조두순 사건’ 이후 시행 1년 만에 권고형량을 50% 상향 조정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총 네 차례 수정한 바 있다.

4) 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 공동폭력 행사자, ② 3주 이상 상해, 중요 공용물손상 경합시, ③ 5년 내 동종전과자, ④ 의도적인 범인체포·면탈·방해목적인 경우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나 양형위원회를 통한 실정법상 형량 조정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물론 실정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이기는 하나, 어떠한 입법 과정 없이 진행된 검찰의 구형 강화 정책이 실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도 그 의의가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sup>5)</sup>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며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행위자들은 매우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그 상호의존도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이완규, 2005; 문준영, 2010) 검찰의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책의 효과를 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의미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sup>7)</sup>

이하에서는 먼저 엄벌주의와 형벌 포퓰리즘을 둘러싼 기존 논의들을 상세히 살피고 법원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법원 커뮤니티 관점의 논의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엄벌 정책과 양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법원소재지의 영향력을 고려한 분석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엄벌주의와 형사사법정책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검찰 정책의 엄벌주의라는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후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의 폭과 깊이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엄벌주의 및 형벌 포퓰리즘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논의들을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엄벌주의(강벌주의, 중형주

5)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5225판결 등.

7) 검찰의 엄벌주의적 정책 변화는 구체적으로 검사의 구형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구형과 관련된 자료와 양형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때 보다 엄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검사의 구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본 연구는 판결문 자료만을 확보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결과에 한정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임을 밝혀둔다.

의, punitiveness, punitivity, punitivism)란 범죄나 일탈 행동에 대하여 가혹한 형벌 부과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범죄자의 사회복귀나 재사회화보다는 엄격한 처벌과 격리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이해된다(Tonry, 2007; Garland, 2002; 추지현, 2017b). 엄벌주의를 둘러싼 논란은 형벌 포퓰리즘과 맞물려 있다.

형벌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일컫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범죄자에게 중벌을 내리는 것을 지지하는 대중 여론에 영합하여 형벌 강화를 정치적이슈로 삼는 현상에 사용된 것으로(Pratt, 2007: 9-12), 어떠한 형벌 정책이 범죄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sup>8)</sup> 혹은 사법 정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선거 승리를 위해 활용하는 경향이다(Roberts et al., 2003). 형벌 포퓰리즘은 Cohen(1972)의 ‘모럴 패닉(moral panic)’ 연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모럴 패닉이란 성매매, 마약 등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 등의 집단적 반응을 뜻하는데, 특히 언론이 범죄자들을 ‘사회악(folk devil)’으로 간주하고 매우 선정적으로 대중에게 소개하면서 결국 정치가, 종교인 등은 도덕적 장벽을 설정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주의적 처방을 내놓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후 이러한 논의는 Jakobs(1985)의 ‘적대형법(Feindstrafrecht)’, Siehr(2005)의 ‘상징형법(Symbolisches Strafrecht)’과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전개되는데 이들 연구는 형벌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유용하다. 적대형법이란 ‘시민과 적’을 구별하여 형법은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 시민에게만 적용되고(시민형법), 범죄자는 사회의 적이므로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위험 제거만을 목표로 그들에게 적용하는 형법을 의미한다.<sup>9)</sup> 적대형법의 위험성은 오직 사회방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치주의의

8)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이 실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그 자체로 증거기반정책 설계의 핵심이겠으나 형법 포퓰리즘과 관련하여도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된다. 현대의 억제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 체포율, 기소율, 사형제도 등을 활용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다. 다만 형벌의 강도를 높이면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어낸 연구도 다수 있으나(Reynolds, 1997; Cole, 2011; Spelman, 2000 등), 그에 반하여 엄벌주의 정책의 범죄 억제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연구 또한 다수 존재하고 있다(Chiricos&Waldo, 1970; Briscoe, 2004; Sorenson et al., 1999 등). Donohue&Wolfers(2005)는 사형제도와 살인범죄 발생률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현재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떠한 방법론으로도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형사사법에서 증거기반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데이터와 보다 엄밀한 분석방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이호중(2013: 278)에서 재인용.

주요 원칙에 반하는 입법을 정당화한다는 점에 있는데, 이호중(2013)의 연구는 한국 형법에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을 적대형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징입법이란 겉과 속이 다른 입법으로서, 범죄나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에 대한 공포에 대한 응답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만 실상 그러한 문제해결 효과는 거의 없고 단지 사람들을 진정시킬 의도만 가진 입법을 의미하는데,<sup>10)</sup> 이러한 개념이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특히 상징형법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홍준형(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와 전자감시장치 부착법 사례에 대하여 이러한 입법은 심도있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일종의 상징형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정학(2014)의 연구는 엄벌주의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김일수(2010), 정재준(2011)은 보수 정치세력 혹은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하는 엄벌주의적 치안 정책의 배경에 형벌 포퓰리즘이 놓여 있다고 보고 특히 2012년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 기획을 1980년대의 삼청교육대 운영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비판적인 연구 경향과 달리 형벌 포퓰리즘과 엄벌주의에 대하여 개념 범위를 확장하여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논의 또한 이어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Bottoms, 1995; Pratt, 2007; Dzur, 2010). 대표적으로 Pratt(2007)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과 ‘형벌 포퓰리즘’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위주의 정부의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는 방식이고 실제 엄벌에 대한 대중의 요청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형벌 포퓰리즘은 오히려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특정 현안에 대한 엄벌적 대응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김한균, 2019). 즉 고강도 형벌 정책이 곧 과잉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 양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지현(2017b)의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는 형벌 포퓰리즘에 대하여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엄벌주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군사독재정권이라는 권위주의 시기의 자의적이고 탈법적인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형 재량이 보장되는 등 이른바 사법민주화의 기초가

10) 홍준형(2020: 18-19)에서 재인용.

설정되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형량과 함께 처벌 제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보안처분들이 형벌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규범이 강한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이들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입법이 손쉽게 제도화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결코 낮지 않음에도 쉽사리 입법적 형벌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부분 경찰관이다. 경찰관은 아동, 여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아닐 뿐더러 권위주의 정부 시기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되었던 한국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여전히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엄벌주의와 형벌 포퓰리즘에 대한 상반된 시선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검찰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정책에 대하여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한다. 요컨대 검찰의 정책 변화로 인하여 양형 단계에서 상당한 엄벌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라 평가받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즉 입법부를 통하지 않고 형사 사법기관이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센에도 사법부는 줄곧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관대한 양형으로 일관하고 있고 입법적 형벌 강화 또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형 강화를 통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형사사법기관이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부여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양형 편차와 법원 커뮤니티 관점

형사재판과 양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양형 편차(sentencing disparity)’ 개념은 논의의 출발점 혹은 전제가 된다. 유사한 범행, 유사한 사례임에도 법관별, 법원별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 중 최초로 2009년 7개 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하였고 2023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상 범죄군을 확대해가고 있다.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사실상 법관의 재량(judicial discretion)을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양형기준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이며(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sup>11)</sup>, 한국 양형기준의 설정방식 또한 양형 요소의 통계적 계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질적으로 구분하는 개별적·접진적 방식(partial sentencing guidelines)을 선택하였다고 이해된다(박형관, 2011; 박성훈 외, 2015). 요컨대 법관의 재량권 행사를 통한 ‘형벌의 개별화’와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형벌의 객관성’ 사이의 균형이라는 문제에서 양형 편차 논의가 배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양형 편차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80년대 이후 특히 관련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고 2005년 Booker 판결 이후 연방양형기준이 권고적(advisory)으로 전환되면서 양형기준 이탈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Kaiser&Spohn, 2018).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모형과 관련이 깊은 법원별, 법정별 편차에 관한 ‘법원 커뮤니티 관점(the courtroom community perspective)’의 논의를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즉 만약 어떤 사람이 받는 형량이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 대부분의 서구 법률 체계가 기초하는 평등이라는 정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이다(Ulmer&Johnson, 2004).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법관은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조직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법원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법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원의 ‘규모(size)’와 ‘위치(location)’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Eisenstein et al., 1988; Ulmer, 1997; Ulmer&Johnson, 2004, Johnson, 2005). 법원의 위치는 해당 지역의 연령 구조(Kramer&Steffensmeier, 1993), 인종 구

11) 물론 대법원은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고(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11448판결)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법원조직법 제81의7조).

성(Crawford et al., 1998; Johnson, 2003), 도시화 정도(Britt, 2000; Hagan, 1977), 정당 성향(Helms&Jacobs, 2002), 실업률(Myers&Talarico, 1987), 범죄율(Crawford et al., 1998)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의 규모는 법원 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정도와 관료주의의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법원별로 차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내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문화적 규범이 ‘양형기준 이탈률’, ‘평균적인 처벌 수준’과 같은 법원의 구조적 특성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Kautt, 2002). Eisenstein et al.(1988)의 연구는 더 큰 관할 구역을 가진 법원일수록 처벌은 덜 가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원 커뮤니티 관점은 법원의 규모와 위치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건 처리 부담(caseload pressure)이나 재판율과 같은 업무 강도, 해당 법원에 배당되는 사건의 유형, 법원자원의 가용성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흉악범죄 배당률이 높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들은 그러한 범죄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법관들에 비하여 흉악범죄를 덜 심각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Eisenstein et al., 1988). 또한 수감시설의 수용률이 높아진다면 법관들은 범죄자를 구속하기에 주저할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측이다(Johnson, 2005).

한편 국내에서는 양형에 대한 실증적 접근도 충분치 않으며 이러한 법원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최근 박미랑(2017)의 연구는 법원의 업무량 부담, 위치 및 도시화를 고려하여 살인범죄의 양형 편차를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이러한 법원 특성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관련 정보는 통제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심각성(offense severity level)이 누락되어 있어 추정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법원 커뮤니티 관점이 한국 법원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양형 연구에서 법원의 조직적, 사회적 특성에 주목하고 분석모형에 반영하는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검찰의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책은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법원의 지역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엄벌주의 정책은 2014년 검찰의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처 지시’로서 원칙적 구공판, 원칙적 구속수사, 각 구간 최고형 구형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여부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가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H1* : 검찰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의 시행은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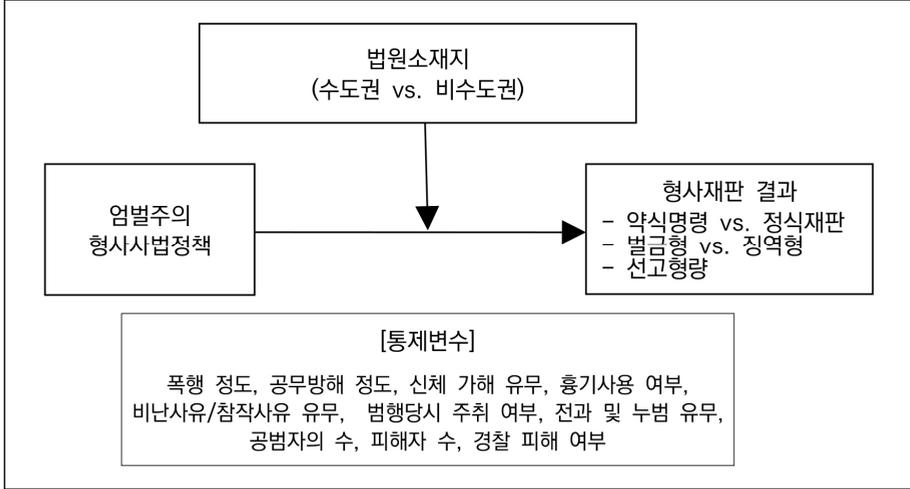
*H1-1* : 검찰의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의 시행 이후 약식명령보다 정식재판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증가할 것이다.

*H1-2* : 검찰의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의 시행 이후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증가할 것이다.

*H1-3* : 검찰의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의 시행 이후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형량이 증가할 것이다.

*H2* : 검찰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법원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1]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 법원소재지와 형사재판 결과 간의 관계 모형



##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전국 지방법원의 형사재판 1심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을 원자료로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sup>12)</sup> 독립변수가 되는 검찰의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이 2014년 3월 시행되었으므로 정책 전후로 2013년 10~12월, 2014년 10~12월에 선고된 사건으로 기간을 한정하였다.<sup>13)</sup> 분석단위는 ‘개별사건’인데, 사법연감 등 여러 공식 통계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문 자료의 사건번호가 아닌 행위자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총 1,519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만 비교대상이 되는 사건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경합범 등을 모두 제외하고 단순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12) 판결문 자료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 방법 등은 제1저자의 이전 연구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오윤이, 2020). 판결문에서 특히 ‘범죄사실’ 및 ‘양형의 이유’가 적시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13)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제257조)을 감안하여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자 하였다. 다만 약식명령과 벌금형 선고 사건의 수가 다른 종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으므로 해당 기간 중 사건 수가 가장 많은 11월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실상 범행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정이라 말할 수 있으므로 양형 연구에 있어 통제변수의 설정은 상당히 까다로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범죄의 심각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가장 핵심적인 주요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sup>14)</sup> 양형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들은 대부분 양형기준상의 인자를 기준으로 통제변수를 설정하고 있는데,<sup>15)</sup> 사실상 이 두 가지 핵심 변수를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범행 당시 폭행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공무방해의 정도, 또는 신체 가해 유무가 가장 기본적인 통제변수가 되어야 하며 전과 및 누범 유무 변수 또한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폭행의 정도와 공무방해의 정도, 누범 이외의 범죄전력 유무 등은 판결문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법이론과 양형기준상의 인자 정의 등을 활용하여 분명한 기준을 세워 코딩하는 작업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폭행 정도’ 변수의 경우 강/약의 두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때 기준은 법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폭행/소극적인 폭행’ 및 ‘계획적인 폭행/우발적인 폭행’으로 설정하였다. 즉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폭행이나 우발적인 폭행은 약한 것으로 코딩하였다.<sup>16)</sup> ‘공무방해 정도’ 변수는 양형기준상의 인자 중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여 코딩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첫째,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둘째,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셋째,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이다. 끝으로 ‘신체 가해 유무’ 변수는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는 폭행과 협박이 실제 신체의 접촉

14) 종합적 설정방식(comprehensive sentencing guidelines)을 선택한 미연방 양형기준의 경우 수평축에 ‘행위자 점수(criminal history points)’를 두고 수직축에는 ‘행위 점수(offense level)’를 두어 두 축의 결합을 통해 추정적 양형수준(presumptive sentencing level)을 계산한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 우리 양형기준은 양형 요소의 통계적 계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질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박성훈 외, 2014) 사실상 양형기준상의 인자들을 그대로 분석모형에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6)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은 폭행의 유무에 비하여 주관적인 작업이나 실제 양형 과정에서 법관은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요소로서 폭행의 ‘정도’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의 통제변수 설정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제외할 수 없으며 다만 코딩 단계에서 최대한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법조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후, 크로스코더를 통하여 코딩 작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없이 욱설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사건의 경우 신체 가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제도가 피고인의 범 죄전력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므로 누범 외 양형인자로 포괄하지 못하는 모든 기타 범 죄전력을 추출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렇듯 양형기준상의 인자 외에 추가로 구성한 통제변수들의 중요도는 후술할 분석결과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판결문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피고인 관련 정보 및 피해자 관련 정보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특히 엄벌정책이 구체적으로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범행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정보에서 경찰공무원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수와 함께 추출하였다.<sup>17)</sup>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특성상 개별사건들(n=1,519)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동일한 관할법원 내에서 처리되는 사건들 간에는 재판과정이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귀모형이 전제하는 핵심 가정 중 하나인 오차항의 독립성이 위배되어 추정된 회귀계수의 표본오차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경우 대부분 표본 오차가 과소 추정되어 가설 검증시 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법원 단위에서 측정되는 다양한 특성들이 종속변수인 개별 사건처리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추정된 회귀계수들의 불편성(unbiasedness)까지도 의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가진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모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수준 일반 선형회귀모형(multi-level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회귀모형 주요 가정의 위배를 최소화하며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1차원(개

17) 독립변수인 엄벌정책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정복착용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건만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없이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검찰의 정책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행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되므로(2001년, 2006년, 2011년) 피해자가 경찰 이외에 복지공무원이나 소방관 등인 경우에도 엄벌정책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사건들을 모두 제외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정복 착용 경찰공무원인지 여부에 대한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실제 95% 이상의 사건이 이에 해당하여 분석 결과에서 큰 차이는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별 사건)과 2차원(관할 법원) 분석단위에서 측정된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주 효과(main effect)는 물론, 개별 사건 단위에서 도출된 엄벌주의적 정책의 효과가 법원의 소재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교차수준 상호작용 효과(cross-level interaction effect)에 대한 가설들까지도 추가로 검증하고자 한다(Raudenbush&Bryk, 2002). 분석에 이용된 통계패키지는 STATA 17(StataCorp, 2022)이다.

## IV. 분석결과

### 1. 기술통계량

<표 1>은 분석에 이용된 모든 변수들의 특성을 기술통계량을 통해 요약하고 있다. 우선 종속변수를 살펴보면 표본에 포함된 전체 공무집행방해 사건들 중 27%가 약식명령, 73%가 정식재판을 통해서 처리되었으며 동 사건들에 대해 벌금형은 47%,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은 53%가 선고되었다.<sup>18)</sup> 이분형으로 측정된 앞선 두 가지 종속변수들과는 달리 연속형 변수로 측정된 피고인들의 실제 형량은 평균 3.35개월(최솟값: 0, 최댓값: 1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변화는 2013년에 처리된 사건이 39%, 2014년에 처리된 사건은 61%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검찰의 엄벌주의적 정책 시행 이후 단순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사람의 수가 동일 기간으로 한정할 때 약 50%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18) 다만 본 연구가 수집한 자료는 판결문 수집의 어려움과 양적 자료로의 변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사건에 대하여 동일 기간으로 추출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단순공무집행방해범죄 사건에 한정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벌금형에 비하여 훨씬 적으므로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추출 기간을 달리하는 선택을 하였고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실제 형종별 선고 비율은 동일 기간에 한정하여 요약한 자료인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 법원의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접수건수 또한 2013년도 5,242건에서 2014년도 10,396건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기술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b>Level 1</b>				
종속변수				
정식재판 여부(약식명령=0, 정식재판=1)	.73	.44	0	1
징역형 여부(벌금형=0, 징역형=1)	.53	.50	0	1
형량-집행유예 포함 (개월)	3.35	3.43	0	18
독립변수				
정책변화(2013=0, 2014=1)	.61	.49	0	1
통제변수				
폭행 정도*(약=0, 강=1)	.37	.48	0	1
공무방해 정도*(약=0, 강=1)	.11	.31	0	1
흉기사용*(무=0, 유=1)	.10	.30	0	1
비난사유*(무=0, 유=1)	.04	.21	0	1
참작사유*(무=0, 유=1)	.19	.39	0	1
주취 여부*(무=0, 유=1)	.64	.48	0	1
공범 (명)	.06	.29	0	3
피해자 (명)	1.26	.50	0	4
피해자경찰*(무=0, 유=1)	.95	.21	0	1
신체 가해 유무*(무=0, 유=1)	.96	.21	0	1
전과 유무*(무=0, 유=1)	.42	.49	0	1
누범 유무*(무=0, 유=1)	.03	.16	0	1
<b>Level 2</b>				
법원소재지*(수도권=0, 비수도권=1)	.45	.50	0	1

\* 표시된 변수들은 이분형으로 측정되었으므로 평균은 비율을 나타냄

통제변수들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던 경우(64%),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95%), 그리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가 있었던 경우(96%)가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경우는 37%, 공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했던 경우는 11%,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10%,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4%,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19%, 공범이 있는 경우 6%, 전과가 있는 경우<sup>20)</sup> 42%, 그리고 동종 또는 이종 누범인 경우는 3%인 것으로 요

약되었다. 마지막으로 법원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인 법원소제지의 경우 전체 법원 중 45%가 비수도권<sup>21)</sup>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와 [그림 3]은 2014년 3월에 시행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 전후로 검사의 기소처분과 법원에서의 양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그림 2]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sup>22)</sup>에 대한 검찰 기소처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2001년 이후로 줄곧 검찰은 구공판보다는 구약식을 선호하여 왔다. 구약식률은 매년 70~79% 수준이었는데 2014년 이후 33% 정도로 급감하고 이후 16%까지 낮아졌다. 검찰 단계에서의 구속률 또한 2010년 이후 6~7% 수준이었으나 2014년 12% 정도로 두 배 정도 크게 상승하였다. 즉 2014년 3월 검찰의 엄벌주의 정책에서 ‘원칙적 구공판’과 동종전과 없고 취중범행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원칙적 구속수사’라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현실에서 구현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그림이다.

[그림 3]은 엄벌주의 정책이 판사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법원소제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각 연도별 11월 한 달 간의 사건 수 자료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정책 전후, 선고 형종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점, 또한 각 선고 형종별 변화의 방향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즉 실행 선고 사건과 집행유예가 부가된 징역형 선고 사건, 정식재판을 통한 벌금형 선고 사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약식명령을 통해 종결된 사건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은 소재지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식명령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정책 시행 이전 195건에서 17건으로 현격히 감소하였는데, 비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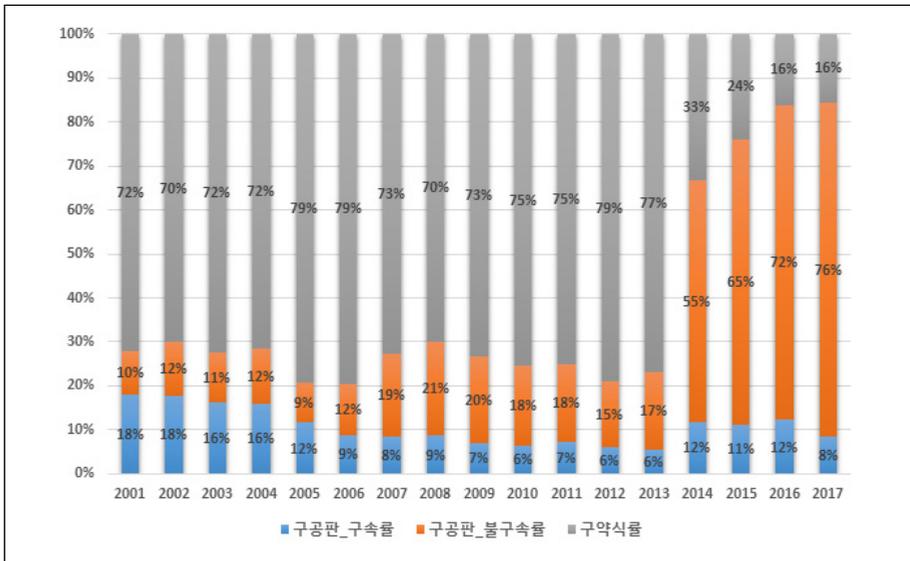
20)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단순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의 범죄전력 관련 인자들 중 ‘동종누범’,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에 한정한다면 범죄 전력 정보를 거의 누락시키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3%). 따라서 이들 외에 다른 모든 범죄전력 유무를 포괄하는 변수를 새로 구성하였다.

21) 수도권에는 서울 및 의정부, 인천, 수원 등 경기 지역의 법원을 모두 포괄하였다.

22) 현행 형법은 각칙 제8장에서 ‘공무방해에 관한 죄(Widerstand gegen die Staatsgewalt)’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두고, 직방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방해죄 등 여러 수정적, 가중적 범죄들을 포괄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기소처분의 변화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 『범죄분석통계』 자료를 활용하였고 여기에서는 각칙상의 범죄 분류에 맞추어 통계자료를 발표하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단순공무집행방해’에 한정된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단순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전체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서 약 85%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이민식, 2018: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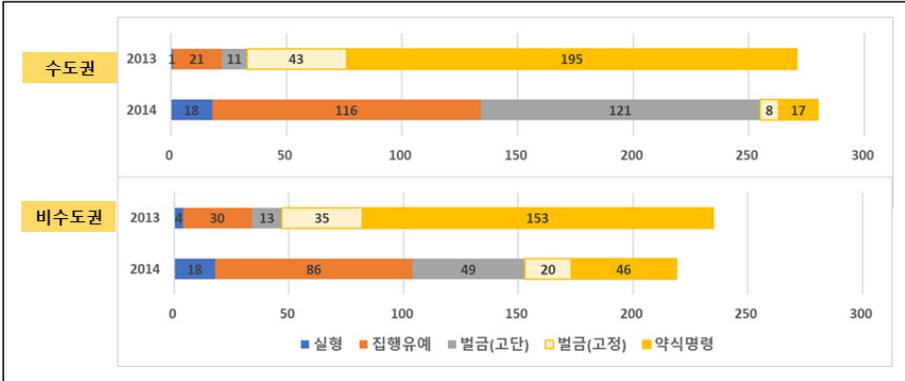
에서는 153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더 나아가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중 사건번호가 ‘고단’으로 시작하는 사건과 ‘고정’으로 시작하는 사건의 분포 또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고정’ 사건의 경우 출발은 약식명령이었으나 당사자가 그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담당검사가 구약식과 구공판 중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고단’ 사건에는 구약식 사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나, 대체로 수도권에서는 정책 이전, 총 238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는데 정책 이후 25건으로 약 1/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정책 이전, 188건에서 66건으로 약 1/3로 감소하였으므로 ‘원칙적 구공판’이라는 정책 내용에 대한 검사들의 순응도가 지역에 따라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그림 2]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검찰 기소처분의 변화 추이



\*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그림 3] 정책 전후 선고 형종에 대한 지역별 비교(사건 수)



\* 출처: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재구성함

## 2. 다수준 회귀분석

우선 다수준 분석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사건 수준에서 측정된 종속변수의 전체 변동량 중 법원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는 변동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계층 내 상관 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한 결과 .105(정식재판 여부), .049(징역형 여부), .096(형량)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다수준 분석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법원의 양형에 대한 해외의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sup>24)</sup>, 그리고 개별사건 수준에서 측정된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클 수밖에 없는 형사재판 데이터의 속성상 위와 같이 도출된 ICC만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개별사건과 법원 수준에서 측정된 설명변수들을 단계별로 추가한 모형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표 2>부터 <표 4>까지 보고된 결과들은 모두 해당 모형의 절편값은 56개 법원별로 (즉, level 2에서)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도록 지정한 후(= random intercept model),

24) 예를 들어 Johnson(2006)은 설명변수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에서 측정된 ICC가 .05(종속변수: 실행여부)와 .06(종속변수: 형량)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수준에서 측정된 설명변수들의 유의미한 주 효과(main effect) 및 수준간 상호작용 효과(cross-level interaction effect)를 도출해 내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 Johnson(2014)은 종속변수별로 각각 .04에서 .08 정도의 ICC를 가지고도 유의미한 다수준 분석의 결과를 찾아내었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개별사건 수준(level 1)에서 측정된 설명변수들의 고정효과(fixed effect)에 대한 추정치를, 모형 3에서는 절편값(intercept as an outcome model)과 개별사건 수준(level 1)에서의 주요 설명변수인 ‘엄벌주의 정책 시행 여부’의 기울기 값(slope as an outcome model)이 법원 수준(level 2)의 설명변수인 법원 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 가. 약식명령 대 정식재판

<표 2>의 모형 1의 결과는 통제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찰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 시행의 효과가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 정책의 시행 이전인 2013년에 비해 시행 이후인 2014년에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정식재판으로 처리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다(3.15,  $p < .001$ ).<sup>25)</sup> 회귀계수 추정치를 오즈비(odds ratio)로 환산하면 23.32이며 이는 동 정책의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법원이 정식재판을 할 확률은 약식명령으로 재판할 확률에 비해서 23배 이상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표 2>의 모형 2의 결과는 이러한 패턴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별사건 수준(level 1)에서 측정된 주요 요인들을 최대한 모형에 반영하여 통제한 이후에도 지속되어 가설이 지지됨을 보다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요 구성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59,  $p < .001$ )와 신체 가해 유무(1.25,  $p < .01$ ), 공범 수(2.09,  $p < .01$ )는 정(+)의 방향으로,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는지 여부(-.41,  $p < .05$ )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했는지 여부(-.43,  $p < .05$ )는 부(-)의 방향으로 정식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이후에도 엄벌주의 정책의 시행 이후 정식재판으로 처리될 확률은 여전히 증가하였음이 드러났다.

25)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여부는 통상 검찰이 구약식으로 기소했는지 또는 구공판으로 기소했는지에 상당 부분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엄벌주의 정책이 검찰의 처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판결문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므로 직접적으로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의 고견을 받아들여 여기서의 분석 또한 재판 결과의 하나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법원과 판사에 한정하여 해석하고자 하였음을 밝혀둔다.

데(3.18,  $p < .001$ , 오즈비: 24.47) 이는 동 정책의 핵심 내용인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실제 검사 및 판사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의 모형 3은 개별사건의 수준을 넘어 법원 수준에서 추정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개별 사건 수준에서 측정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조정한 이후 추정된 법원 단위의 절편값들( $n=56$ )의 변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intercept as an outcome’ model)에서는 법원의 소재지가 법원 별 평균 정식재판 청구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33,  $p=.23$ ). 하지만 1차원과 2차원에서 측정된 설명변수들 간의 교차수준 상호작용형(cross-level interaction)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 2에서 이미 도출된 엄벌정책의 유의미한 효과는 법원의 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소재 법원일수록 수도권 소재 법원에 비해 엄벌주의 정책이 미치는 효과가 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1.74,  $p < .01$ ).

이는 수도권 법원에 비해 비수도권 법원이 엄벌주의 정책의 시행 이후 약식명령보다 정식재판으로 처리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수도권 소재 법원일수록 엄벌주의 정책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그림 3]에서 나타난 기술통계량만을 단순 비교해보아도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는 동 정책의 시행 이후 약식명령이 2013년에서 2014년 1/1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소재 법원의 경우 1/3 수준으로 수도권 소재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보다 정교한 분석모형인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교차수준 상호작용 효과의 검증결과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져 비슷한 공무 집행방해 사건일지라도 피고인이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정식재판으로 처리될 확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개별사건의 특성뿐만 아니라 관할 법원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정식재판 여부)

변수명	약식명령 (=0) 대 정식재판 (=1)		
	모형 1	모형 2	모형 3
	회귀계수(표본오차)	회귀계수(표본오차)	회귀계수(표본오차)
엄벌주의정책 시행 여부 (2013년=0, 2014년=1)	3.15*** (.17)	3.18*** (.18)	4.38*** (.48)
<b>통제변수</b>			
폭행 정도 (약=0, 강=1)		.59*** (.17)	.58** (.17)
공무방해 정도 (약=0, 강=1)		-.01 (.26)	.08 (.26)
흥기사용 (무=0, 유=1)		.32 (.27)	.44 (.27)
비난사유 (무=0, 유=1)		.57 (.41)	.42 (.41)
참작사유 (무=0, 유=1)		-.43* (.19)	-.50* (.19)
주취 여부 (무=0, 유=1)		-.41* (.17)	-.44* (.17)
공범 (명)		2.09** (.74)	2.14** (.75)
피해자 (명)		-.08 (.16)	-.10 (.16)
피해자-경찰 (무=0, 유=1)		-.40 (.56)	-.35 (.37)
신체 가해 유무 (무=0, 유=1)		1.25** (.37)	1.39*** (.40)
법원소재지 (수도권 =0, 비수도권=1)			.33 (.30)
정책변화 X 법원소재지			-1.74** (.57)
상수항	-.33* (.16)	-1.00*** (.53)	-1.24* (.57)
Log Likelihood	-619.29	-590.31	-573.40
ICC	.174	.144	.129
Level 1(피고인)	1,519	1,519	1,519
Level 2 (법원)	56	56	56

+ p<.10, \* p<.05, \*\* p<.01, \*\*\* p<.001

### 나. 벌금형 대 징역형

앞서 <표 2>에서 관측된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종속변수를 달리한 <표 3>의 결과도 동 정책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실제로 강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우선 통제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형 1의 결과는 동 정책의 시행 이후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비해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2.11, p<.001). 이를 오즈비(odds ratio)로 환산하면 8.24이며 이는 동 정책의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시행 이후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벌금형을 받을 확률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추정된 정책효과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모형에 반영한 이후 그 크기가 다소 감소하였을 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입증되었다. 우선 <표 3> 모형 2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표 2>의 모형 2의 결과와 유사하게 범행시 폭행의 정도(.48,  $p < .01$ ), 신체 가해 유무(.76,  $p < .05$ )가 종속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추가로 전과(2.60,  $p < .001$ ) 및 누범(1.20,  $p < .05$ ) 유무<sup>26)</sup>도 정(+)의 방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조정한 이후에도 엄벌주의정책의 시행 이후 법원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고할 확률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이 드러났다(1.58,  $p < .001$ , 오즈비: 5.09). 이는 <표 2>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정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한 결과 실제 정식재판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약식재판의 경우 벌금형 선고에 불과하지만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 3> 모형 3의 결과는 법원의 소재지에 따라 양형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소재 법원과 비수도권 소재 법원 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30,  $p = .21$ ), 모형 2에서 추정된 엄벌정책이 징역형을 선고할 확률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 또한 법원의 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  $p = .60$ ). 실제로 [그림 3]의 기술통계량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는 동 정책의 시행 이후 징역형이 2013년 22건에서 2014년 13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소재 법원에서도 2013년 34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결국, 추정된 상호작용항 회귀계수의 방향에서도 보여지듯이 정책 시행 이후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징역형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26) 전과유무와 누범유무는 <표 2>의 약식명령 대 정식재판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약식명령 판결문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관한 설명이 전무하므로 관련 정보를 추출할 수 없어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할 설명력이 부재하였고 그 결과 해당 회귀계수의 추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표 3>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징역형 여부)

변수명	벌금형 (=0) 대 징역형 (=1)		
	모형 1	모형 2	모형 3
	회귀계수(표본오차)	회귀계수(표본오차)	회귀계수(표본오차)
엄벌주의정책 시행 여부 (2013년=0, 2014년=1)	2.11*** (.13)	1.58*** (.15)	1.54*** (.32)
통제변수			
폭행 정도 (약=0, 강=1)		.48** (.15)	.52** (.15)
공무방해 정도 (약=0, 강=1)		.39+ (.24)	.43+ (.24)
흥기사용 (무=0, 유=1)		.28 (.24)	.31 (.25)
비난사유 (무=0, 유=1)		-.09 (.35)	-.20 (.36)
참작사유 (무=0, 유=1)		-.24 (.18)	.19 (.19)
주취 여부 (무=0, 유=1)		.08 (.15)	.05 (.15)
공범 (명)		.12 (.24)	.25 (.25)
피해자 (명)		.14 (.15)	.13 (.15)
피해자-경찰 (무=0, 유=1)		-.24 (.33)	-.25 (.35)
신체 가해 유무 (무=0, 유=1)		.76* (.36)	.83* (.38)
전과 유무 (무=0, 유=1)		2.60*** (.16)	2.73*** (.17)
누범 유무 (무=0, 유=1)		1.20* (.60)	1.25* (.60)
법원소재지 (수도권 =0, 비수도권=1)			.30 (.24)
정책변화 X 법원소재지			-.16 (.43)
상수항	-1.11*** (.12)	-2.81*** (.51)	-3.00*** (.55)
Log Likelihood	-878.26	-688.05	-676.18
ICC	.062	.077	.016
Level 1 (피고인)	1,519	1,519	1,519
Level 2 (법원)	56	56	56

† p<.10, \* p<.05, \*\* p<.01, \*\*\* p<.001

#### 다. 선고형량

마지막으로 <표 4>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정책의 시행 전후에 평균적인 형량의 차이가 실제로 발견되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선 <표 2>와 <표 3>에서 발견된 패턴과 유사하게 동 정책의 시행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형량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결과는 동 정책의 시행

이전에 비해 시행 이후 평균 2.77개월 형량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며(2.77,  $p < .001$ ),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반영한 모형 2에서도 회귀계수의 크기만 다소 감소했을 뿐 정책효과는 여전히 기대한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1.49,  $p < .001$ ). 이는 동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양형기준의 산정시 각 구간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판사들의 양형에도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통제변수들에 대한 결과도 이전 분석 결과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범행시 폭행의 정도(.64,  $p < .001$ ), 피해자의 수(.33,  $p < .05$ ), 전과(3.02,  $p < .001$ ) 및 누범 유무(2.63,  $p < .001$ )가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공무방해의 정도(.66,  $p < .05$ )는 선고형량에 대한 분석에서 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범행 당시의 폭행의 정도와 함께 범행이 초래한 피해의 정도가 형량 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법이론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2차원 변수인 법원소재지의 주효과와 조절효과도 <표 2>와 <표 3>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주효과가 유의수준 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즉,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평균 .65개월 정도 형량이 높게 부과되었다는 것이며(.65,  $p = .062$ ), 이는 엄벌정책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판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역시 피고인의 형량이 주로 피고인과 사건의 특성이라는 1차원적 변수에 의해 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한 사건들일지라도 어느 지역에 소재한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여, 후속 연구들이 재판결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시 법원의 특성과 법원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들까지도 고려하여 연구를 한층 더 확장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선고형량)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회귀계수(표본오차)	회귀계수(표본오차)	회귀계수(표본오차)
엄벌주의정책 시행 여부 (2013년=0, 2014년=1)	2.77*** (.16)	1.49*** (.16)	1.49*** (.33)
통제변수			
폭행 정도 (약=0, 강=1)		.64*** (.15)	.64*** (.15)
공무방해 정도 (약=0, 강=1)		.66** (.24)	.71** (.24)
흥기사용 (무=0, 유=1)		.30 (.24)	.33 (.24)
비난사유 (무=0, 유=1)		-.29 (.34)	-.36 (.34)
참작사유 (무=0, 유=1)		.27 (.18)	.22 (.18)
주취 여부 (무=0, 유=1)		-.02 (.15)	-.05 (.15)
공범 (명)		-.27 (.24)	-.16 (.25)
피해자 (명)		.33* (.15)	.31* (.14)
피해자경찰 (무=0, 유=1)		-.03 (.34)	-.05 (.34)
신체 가해 유무 (무=0, 유=1)		.47 (.36)	.51 (.35)
전과 유무 (무=0, 유=1)		3.02*** (.16)	3.03*** (.16)
누범 유무 (무=0, 유=1)		2.63*** (.45)	2.59*** (.44)
법원소재지 (수도권 =0, 비수도권=1)			.65+ (.36)
정책변화 X 법원소재지			-.23 (.43)
상수항	1.89*** (.21)	-.09* (.52)	-.26 (.55)
Log Likelihood	-3878.62	-3665.78	-3657.13
ICC	.115	.118	.094
Level 1 (피고인)	1,519	1,519	1,519
Level 2 (법원)	56	56	56

† p<.10, \* p<.05, \*\* p<.01, \*\*\* p<.001

## V. 결론

### 1.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2014년 3월 대검찰청에서 시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주의정책이 실제 법원의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동 정책 시행 이후 약식명령에 비해 정식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으로 선고될 가능성, 그리고 선고된 형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해당 정책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그러한 정책의 효과는 관할법원의 소재지에 따라 일부 지역적인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동 정책 시행 이후 정식재판으로 처리되는 건수의 증가는 비수도권에 비해 특히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실제 선고된 형량의 경우는 정책의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비수도권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다수준 회귀분석에서 발견된 주요 패턴들은 일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2차원(level 2)에 해당하는 전국 법원의 수가 56개에 불과하여 통계적 검증력(statistical power)이 다소 떨어지는 제약 하에서 도출된 결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종속변수를 활용한 세 가지 분석모형에서 가설과 일치하는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는 회귀계수가 일관되게 추정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 비하여 수도권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는 앞서 살펴본 법원 커뮤니티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수도권’이라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 해당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법관들의 개별적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법원의 경우 폭행과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요구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상 그와 동종범죄라고 할 수 있는 폭력범죄 중 보다 중한 범행을 상대적으로 자주 접하기 때문에 단순공무집행과 같은 경한 범행에 대하여 더 온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추후 관련 실증분석을 더욱 확장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정식재판의 증가는 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와 분석이 요구된다. 다만 정책집행론에서의 논의가 일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정책집행에서 집행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무수하게 많은데 집행체계가 복잡할수록 집행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며, 이는 특히 수직적으로 볼 때 상하 조직들 간의 체계가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책내용이 집행 과정에서 변질되는 문제로 이해된다(정정길 외, 2022; 유훈, 2016). 즉 정보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

해 사범을 엄청 대처하라는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정책이 전국의 일선 검찰청으로 전달되면서 사실상 해당 정책이 통과해야 하는 연계점은 모두 정책집행을 중단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거부점(veto poin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 2.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와 같이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과 실제 재판 결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범행과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검사의 구형량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구형과 양형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최선의 원자료이지만 공개된 판결문 자료에는 성별, 연령, 직업 등의 피고인 특성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므로 양형 편차에 대한 분석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법관이 범죄자와 피해자 또는 현재의 양형기준과 사법제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갖는 견해 또한 양형 편차의 주요 요인임에도 그러한 판사 개인의 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였고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좀 더 다양한 법원 특성(2차 수준)의 변수가 모형에 반영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나 본 연구에서는 양형에 대한 실증 분석모형의 엄밀성을 높이는 데 집중함으로써 법원 특성과 관련된 분석은 탐색적으로 수행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검사와 판사의 재량을 축소하는 방향의 엄벌주의 정책을 통해 처벌의 확실성과 엄중성을 동시에 높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억제효과(*general deterrence*)와 범죄자에 대한 특별 억제효과(*specific deterrence*)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와 같이 상하관계가 명확한 관료적 조직구조 하에서 비교적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효과가 법원소재지와 같은 법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후속연구에서 양형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함에 있어 분석모형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즉 법원의 조직적, 사회적 특성 중 앞서 살펴보았던 법원별 업무강도와 재판율, 교정기관의 수용률, 배당되는 사건의 종류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법원의 ‘규모’를 고려한 분석이 후속연구로 진행된다면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sc/krsc/main/Main.work>)
- 법무부.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  
[nYN=Y&statId=1976029&outLink=Y#C\\_9.2](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
- \_\_\_\_\_. 법무연감. (<https://www.moj.go.kr/moj/422/subview.do>)
- 법원. 사법연감. (<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  
[un=719](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

### 〈단행본〉

- 문준영. (2010).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경기: 역사비평사.
- 박성훈, 최이문, 강우예. (201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IX): 양형기준 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59.
- 박성훈, 김한균, 김영규, 박철현.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VIII):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70.
- 유훈. (2016). *정책집행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완규. (2005). *검찰제도와 감사의 지위*. 서울: 성민기업.
- 정정길, 이시원, 정준금, 김성수, 최종원, 정광호, 권혁주, 문명재. (2022).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홍준형. (2020). *상징입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 〈논문〉

- 김일수. (2010). 현대 형사정책에서 엄벌주의 등장. *대검찰청 용역연구보고서*.
- 김한균. (2008).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민주법학* 37, 311-344.
- \_\_\_\_\_. (2019). 고강도 형벌정책과 걱정만 양형. *형사정책* 31, 161-189.
- 박미랑. (2017). 살인 범죄 양형 편차, 누구의 영향력인가?: 사건 당사자와 법정행위자

- 집단, 그리고 법원조직 특성의 영향력 비교. *형사법의 신동향* 55, 238-282.
- 박상용. (2010).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개선방안. *경찰연구논집* 6, 51-81.
- 박형관. (2011). *종합적 양형기준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 최초 양형기준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윤이. (2020).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새로운 양형요인 탐색: 판결문 자료의 양적 변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4(2), 219-246.
- \_\_\_\_\_. (2021).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덕인. (2011). 강벌주의 형사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범죄 처벌과 재범방지정책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3(3), 261-284.
- 이민식. (2018).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학* 12(3), 51-68.
- 이진국. (2014). 공무집행방해·무고 등 사법교란 사범 엄단 방안(외국사례 연구 등).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 이호중. (2013). 사회안전과 형사실체법의 변화, 과제와 전망 - 신자유주의 안전담론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5(3), 269-309.
- 정우일. (2009). 민사적 접근을 통한 경찰의 공권력 확보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3), 139-168.
- 정재준. (2011). 정부의 성향에 따른 형사사법의 통계적 수치 비교. *고려법학* 60, 317-354.
- 차훈진. (2009). 깨진 창 이론과 공권력침해 범죄. *한국범죄심리연구* 5(2), 237-255.
- 추지현. (2017a). 엄벌주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의 동향과 쟁점. *형사정책연구* 28(2), 155-179.
- \_\_\_\_\_. (2017b).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정학. (2014).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민주법학* 54, 211-242.
- 하태훈. (2022). 증거기반 형사정책과 형사입법. *형사정책* 34(3), 7-34.

- in *The Politics of Sentencing Reform* (Clarkson, C. & Morgan, R. (eds.)): 17-50. Oxford: Clarendon Press.
- Briscoe, S. (2004). Raising the bar: can increased statutory penalties deter drink-driver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6(5): 919-929.
- Britt, C. L. (2000). Social context and racial disparities in punishment decisions. *Justice Quarterly*, 17(4), 707-732.
- Chiricos, T. G., & Waldo, G. P. (1970). Punishment and crime: An examination of some empirical evidence. *Social Problems*, 18(2): 200-217.
- Cohen, S. (1972). *Folk Devil and Moral Panics*. New York: Routledge.
- Cole, D. (2011). Turning the corner on mass incarceration.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9: 27-52.
- Crawford, C., Chiricos, T., & Kleck, G. (1998). Race, racial threat, and sentencing of habitual offenders. *Criminology*, 36(3), 481-512.
- Donohue, J. J., & Wolfers, J. (2005). Uses and Abuses of Empirical Evidence in the Death Penalty Debate. *Stanford Law Review*, 58(3), 791-845.
- Dzur, A. W. (2010). The myth of penal populism: Democracy citizen participation, and American hyperincarceration. *Journal of Speculative Philosophy*, 24(4), 354-379.
- Eisenstein, J., Flemming, R. B., & Nardulli, P. F. (1988). *The contours of justice: Communities and their courts*. Boston, MA: Little, Brown.
- Garland, D. (2002). *The Culture of Control: Crime and Social Order in Contemporary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gan, J. (1977). Criminal justice i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A study of the bureaucratization of justice. *Social Forces*, 55(3), 597-612.
- Helms, R., & Jacobs, D. (2002). The political context of sentencing: An analysis of community and individual determinants. *Social forces*, 81(2), 577-604.
- Jakobs, G. (1985). *Kriminalisierung im Vorfeld einer Rechtsgutsverletzung*. ZStW.
- Johnson, B. D. (2003).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sentencing departures

- across modes of conviction. *Criminology*, 41(2), 449-490.
- \_\_\_\_\_. (2005). Contextual disparities in guidelines departures: Courtroom social contexts, guidelines compliance, and extralegal disparities in criminal sentencing. *Criminology*, 43(3), 761-796.
- \_\_\_\_\_. (2006). The multilevel context of criminal sentencing: Integrating judge and county level influences. *Criminology*, 44(2), 259-298.
- \_\_\_\_\_. (2014). Judges on trial: A reexamination of judicial race and gender effects across modes of conviction.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5(2), 159-184.
- Kaiser, K., & Spohn, C. (2018). Why do judges depart? A review of reasons for judicial departures in federal sentencing. *Criminology, Crim. Just. L & Soc'y*, 19, 43-62.
- Kautt, P. M. (2002). Location, location, location: Interdistrict and intercircuit variation in sentencing outcomes for federal drug-trafficking offenses. *Justice Quarterly*, 19(4), 633-671.
- Kramer, J., & Steffensmeir, D. (1993). Race and imprisonment decision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4(2), 357-376.
- Kramer, J. H., & Ulmer, J. (2002). Downward departures for serious violent offenders: local court 'corrections' to Pennsylvania's Sentencing Guidelines. *Criminology*, 40, 601-636.
- Myers, M. A., & Talarico, S. M. (2012). *The social contexts of criminal sentencing*.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Pratt, J. (2007). *Penal Populism*.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Vol. 1). sage.
- Reynolds, M. O. (1997).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1997 update*. Dallas, TX: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 Roberts, J., Stalands, L., Indermaur, D., & Hough, M. (2003). *Penal Populism*

- and Public Opinion: Lessons from Five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 Siehr, A. (2005). Objektivitaet in der Gesetzgebung? Symbolische Gesetzgebung zwischen Rationalitaetsanspruch des Gesetes und demokratischem Merhheitsprinzip. *Archiv fuer Rechts-und Sozialphilosphie*, 91(4), 535-557.
- Sorensen, J., Wrinkle, R., Brewer, V., & Marquart, J. (1999). Capital punishment and deterrence: Examining the effect of executions on murder in Texas. *Crime & Delinquency*, 45(4), 481-493.
- Spelman, W. (2000). What recent studies do (and don't) tell us about imprisonment and crime. *Crime and justice*, 27, 419-494.
- StataCorp. (2022). Stata Statistical Software: Release 17. StataCorp LP.
- Tonry, M. H. (Ed.). (2007). *Crime, Punishment and Politic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hicago: The Unversity of Chicago Press.
- Ulmer, J. T. (1997). *Social worlds of sentencing: Court communities under sentencing guidelines*. SUNY Press.
- \_\_\_\_\_. (2012). Recent developments and new directions in sentencing research. *Justice Quarterly*, 29(1), 1-40.
- Ulmer, J. T., & Johnson, B. (2004). Sentencing in context: A multilevel analysis. *Criminology*, 42(1), 137-178.

## Effects of Punitive Criminal Justice Policy on Trial Outcomes

- Focusing on Crimes of Obstruction of Justice

Oh, Yuni\* · Na, Chongmin\*\*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punitive policy for obstruction of justice implemented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March 2014 on the trial outcomes based on the contents of court judgments. Given the hierarchical nature of the data, we used a multi-level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model and found that the policy had a substantial impact on trial outcome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likelihood of a formal trial compared to a summary judgment, the likelihood of a prison sentence compared to a fine, and the length of the sentence imposed. We also analyzed whether the outcomes of these individual cases varied by court location and found that courts in non-metropolitan areas tended to sentence more harshly than those in metropolitan areas, regardless of whether the policy was in place, and that the effect of the policy was less pronounced in non-metropolitan areas than in metropolitan areas. These key findings on regional variation in trial outcomes are limited by the fact that only some of them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re subject to a number of limitations, so we look forward to further research to test them more rigorously.

❖ Key words: punitiveness, criminal justice policy, trial outcomes, sentencing,

---

\* The 1st Author, Post-doctoral Researcher, BK21FOUR Cente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atemal@sn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gmin20@snu.ac.kr)

obstruction of justice

투고일 : 2월 28일 / 심사일 : 3월 27일 / 게재확정일 : 3월 30일